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』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3년 5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5조(실태조사)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제6조(지원사업)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1) 건강가정지원법 제5조

2)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7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기간: 2023. 4. 13. ~ 2023. 5. 3.(20일간)
- 2) 입법예고 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 -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 없음
- 3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: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
 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
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
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
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
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실태조사) ① · ② (생 략)	제5조(실태조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제6조(지원사업) (생 략)	제6조(지원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